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관계부처 합의 전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,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.

1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
2.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
3.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(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·② (생 략)	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,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	③ ---------- 다음 각 호의 ----------.
<신 설>	1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
<신 설>	2.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
<신 설>	3.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(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)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	④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	<삭 제>

인 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83